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62회 제1차 정례회 (2023. 6. 14.)

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
운용 계획(안)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운용 계획(안)

검 토 보 고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권 하 나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3-63
- 나. 제 안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안일자: 2023년 5월 19일(금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3년 5월 25일(목)

2. 제안사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제2항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운용 계획(안)을 제출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설치년도 : 2023년
- 나. 설치목적
 -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(예산총액의 1% 이내) 준수 및 각종 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예수예탁 창구 마련

다. 재원조성

-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예수금)
-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-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라. 기금용도

-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
-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-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4.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

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

다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5. 검토보고

- 금번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운용 계획(안)은 지난 2020년 6월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이 개정되고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가 제정(2021. 12. 30.)됨에 따라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- 동 기금 운용계획(안)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의 여유자금과 주차장 특별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,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, 일반회계에서 222억 4천 8백만 원,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01억 6천 6백만 원,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7억 5천 9백만 원, 건축안전 특별회계에서 22억 4천 5백만 원 총 454억 2천만 원을 예치하겠다는 것임.

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운용계획

1) 수입계획

- 일반회계 : 22,248,730천원
- 특별회계 : 23,171,584천원

(2023년 제1회 추경예산(안) 기준, 단위: 천원)

특별회계명	(본예산+추경) 예산총액(A)	예비비		통합계정 예치금(추계) (D=B-C)
		(본예산+추경) 예비비(B)	예산총액(A)의1% 이내(C)	
총계	45,438,040	23,624,584	453,000	23,171,584
주차장특별회계	41,895,002	20,584,056	418,000	20,166,056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	1,102,777	770,825	11,000	759,825
건축안전특별회계	2,440,261	2,269,703	24,000	2,245,703

2) 지출계획

- 예치기관 : 구금고(우리은행)
- 예치금 : 45,420,314천원

- 관련법인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¹⁾는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편성한도를 1% 범위내로 정하고 있는 바, 이에 따라 우리 마포구의 주차장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1%만 편성하고 그 외 여유자금을 동 기금계정에 적립하여 예치하려는 것임.
- 현재 동 기금은 올해 처음 조성되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 별다른 지출계획은 없으며 최소한의 예비비만 남기고 여유자금을 모두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1) 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- 한편, 편성된 예산액을 변경할 경우 추경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, 기금은 주요항목(정책사업) 지출 금액의 20%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음.²⁾ 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경우 의회 심의가 형형화(形骸化)³⁾ 되는 측면이 있음.
- 따라서, 집행부서에서는 마포구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동 기금의 취지에 발맞추어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아울러,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기금운용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을 하고 성과분석 결과 및 권고사항을 차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.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<개정 2015.7.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**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** <개정 2015.7.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3) 형형화(形骸化):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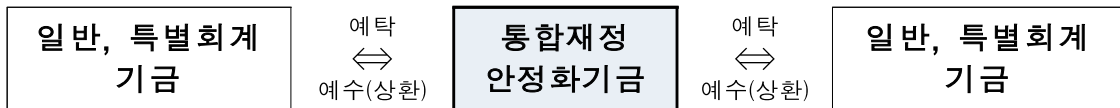
참고 1

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 주요내용

□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(2020.6.9.)

개정내용

- ▶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(기금) 상호 간에 재원을 **예탁·예수할 수 있도록** 허용하는 근거 신설 (지방재정법 제9조의 2, 신설)



- ▶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(예산총액의 1%이내) 설정 (지방재정법 제43조, 개정)
- ▶ 여유자금을 적립·관리하는 기존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여 '통합재정안정화기금' 설치 (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, 개정)

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자원 및 용도

구분	자원	용도
통합 계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예수금) 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 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재정 안정화 계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.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.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<p>단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.</p>

■ 지방재정법

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4조(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(이하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